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저소득 범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09
----------	------

2022. 3. 25.(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2년 3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3월 16일

-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욱 의원)

가. 제안사유

- 지원대상 범위를 현행 갱생보호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현행)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 (개정) 충청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안 제2조)
 - (현행)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 (개정) 갱생보호 대상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및 위탁 규정 (안 제5조) 등

3. 검토보고 요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충청북도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인 충청북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21. 7.31 기준) 은 총 6,137명(성인 5,125명, 소년 1,012명)이며, 도 내 사범별 보호관찰 대상자 비율을 살펴 보면(기타 사범 제외), 성인의 경우, 교통사범(31.66%) > 폭력사범(17.03%) > 사기횡령사범(11.43%) 순으로 나타났고, 소년의 경우 폭력사범(23.93%) > 절도사범(20.55%) > 교통사범(12.27%) 순으로 나타남.

<충청북도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처분별현황	충청북도		전국	
	성인	소년	성인	소년
보호관찰	2,033	668	55,798	18,886
사회봉사	1,101	165	45,550	5,067
수강명령	1,249	172	45,356	5,744
기소유예	134	4	6,296	271
성구매자교육	22		1,419	2
사회봉사(벌금)	243	-	8,577	15
이수명령	192	-	6,326	3
성충동 약물치료	1	-	40	-
음란물소지자교육	6	2	358	29
성폭력교육	74	1	3,187	121
아동학대	20	-	381	-
치료명령	50	-	1,245	4
총 계	5,125	1,012	174,533	30,142
		6,137		204,675

※ 자료: 청주보호관찰소

<충청북도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단위 : %)

사범별	성인	소년
폭력사범	17.03	23.93
교통사범	31.66	12.27
절도사범	3.71	20.55
사기 횡령사범	11.43	6.13
강력사범	1.77	0.31
마약사범	0.8	0.00
풍속사범	4.11	1.53
성폭력사범	14	10.12
경제사범	1.31	0.31
기타사범	14.18	24.85

※ 자료: 청주보호관찰소

- 또한, 국정모니터링지표 통계에 의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 성인의 경우 2015년 5.2%에서 2020년 5.0%로 증가되었고, 소년도 2015년 11.7%에서 2020년 13.5%로 증가됨.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에 비해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은 법무부 소관 사무로 과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행 2011. 10. 5.)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이 포함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 복지 지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점차 확대됨.
-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 청주보호관찰소와 도의회, 집행부 간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갖고 있는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에서는, 조 제목을 “(적용범위)” 에서 “(정의)” 로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임.
 - 현행 조례에서는 도 지원 대상 범위를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선도 사업 육성책임이 규정³⁾되어 있고,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⁴⁾의 사회복지사업에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5항⁵⁾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한 연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 현재 9개 시·도⁶⁾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저소득 법무보호 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 안 제2조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에서는,
- 현행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을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변경함.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한 시·도(9): 대구,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직업훈련·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지원 및 위탁,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가지는 것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업들로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 범위를 현행 갱생보호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부여된 바,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또한,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며,
 - 유관기관 및 집행부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
-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저소득 범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충청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 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중 “대상자 등의” 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도민의 의무)” 를 “(도민의 협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상자 등이” 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로, “노력” 을 “협력” 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귀를” 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직업교육” 을 “직업훈련·교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귀를”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중 “법인 또는 단체 등에”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 중 “대상자 등의”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로,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을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위하여 노력한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u>	<u>충청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u>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u>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청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보호관찰 대상자 등의</u> ----- ----- ----- -----.</p>
<p>제2조(적용범위) “<u>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u>” (이하 “<u>대상자 등</u>” 이라 한다)이란 「<u>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u>」 제3조제3항에 따른 <u>갱생보호대상자 중 충청북도에</u> 주소를 둔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보호관찰 대상자 등</u>” 이란 <u>충청북도에</u> 주소를 둔 「<u>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u>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u>를 말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u>충청북도지사</u> (이하 “<u>도지사</u>” 라고 한다)는 <u>대상자 등의</u>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u>다양한 시책을</u>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 ----- <u>보호관찰 대상자 등의</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도민의 의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도민의 협력) -----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 ----- 협력-----.</p>
<p>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직업교육 사업</p> <p><신 설></p> <p>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지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신 설></p>	<p>제5조(사업) 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p> <p>1. (현행과 같음)</p> <p>2. 직업훈련 · 교육 ----</p> <p>3.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홍보 사업</p> <p>4.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6조(보조)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보조) ----- -----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p>	<p>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p>

관계법령 발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 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제1호

○ 첨부제외 사유

- 제정조례안 제5조 각호에 따라 도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사업 지원 관련 재정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으나,
- 동 조항은 권고적 형식의 임의규정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이 불비한 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